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8가합578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용, 기세운, 기효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서애련, 전민규, 김문석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나주시 D 임야 25,351㎡에 관하여 2017. 3.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5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150,000,000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6. 7. 1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8,100만 원은 C의 계좌로, 3,900만 원은 C가 지정한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로부터 C, G, H, I를 발행인으로, 액면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6. 7. 18, 지급기일 2016. 12. 17.,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광주광역시로 한 약속어음 1장 및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C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 C는 2017. 3. 10. 피고와 '차용금 10억 원을 2017. 9. 9.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나주시 D 임야 25,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C는 2017.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3. 13. 접수 제7378호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 등

○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도 근저당권자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의 2017. 2.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60,000,000원)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6. 15.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으며, J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 그보다 후순위였던 L의 2018. 4.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6. 19. J조합에 818,901,336원, 피고에게 1,546,229,508원, 후순위인 L에게 37,105,687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L에게 배당되는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처분 및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6. 3. 이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법원 2019카단51100 결정)이 내려졌다.

○ 한편 ① 2017. 12.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피고와 L에 대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이 법원 2019가합984 사건)이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1나20865 사건)에서 계속 중이고, ② L이 피고에 대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이 법원 2019가합54943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6,229,508원을 1,082,487,671원으로, L에 대한 배당액 37,105,687원을 500,847,524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21. 2. 9. 확정되었다.

라. C의 자력 등

○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체결된 2017. 3. 10.경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774,570,000원이다.

○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C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J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800,000,000원 ② 2017년 1분기(1월~3월)분의 부가가치세 채무 11,402,380원, ③ 근로소득세 채무 1,924,400원, ④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 ⑤ L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원(L은 2017. 2. 6.부터 2017. 3. 9.까지 C에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1억 원을 변제받았다), ⑥ 주식회사 N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7억 원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2019. 7. 4.자 J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C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원고가 C의 대표 I의 소유인 나주시 P 전 1,593㎡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다른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M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 법원 2018가단512773)에서 M이 2019. 4. 30.까지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인 1억 5,000만 원이 위 조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만족을 얻을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위 조정금액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M으로부터 위 2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체결된 2017. 3. 10.경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774,57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863,326,780원¹⁾ 이므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은 974,570,000원(= 1,774,570,000원 - J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8억 원)으로 일반채권자의 채권액 1,063,326,780원(= 1,863,326,780원 - J조합 대출금채무 8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의 원금이 10억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인해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C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경영회복 주장

1) 피고의 주장

C는 대지조성공사 진행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기고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자금융통을 위해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에 대여한 10억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대지조성공사에 사용되었다거나 C가 차용금 10억 원을 사업 추진에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C의 사업 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50,000,000원의 범위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여 그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가 곧바로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인 C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 피고는 C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²⁾ 중 1억 5,000만 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광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인 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는 채무자인 C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C를 양도 상대방으로 하여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명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일호, 판사 이제승, 판사 김동희

1) 1,863,326,780원 = 800,000,000원 + 11,402,380원 + 1,924,400원 + 150,000,000원 + 200,000,000원 + 700,000,000원

2) M이 피고와 L에 대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배당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억 5,000만 원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